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8 - 59 - 535호
(사건번호 : 201803조사243)

안 건 명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
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의인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38길 42(청량리동, 세종빌딩 3층)
대표이사 강신웅

의 결 일 2018. 10. 31.

주 문

1. 피심인은 필터링 작업¹⁾을 통해 정상가입자의 방송채널 일부를 차단하는 행위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법령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1) 필터링 작업이란 시청자가 가입한 방송 상품에 따라 시청이 가능하도록 세대 외부 TV 단자함의 방송회선에 방송채널 주파수 대역을 제어(채널차단)하는 필터를 설치하는 작업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가입자 방송채널 일부 차단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 방송상품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자체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및 고지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6,557,78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사실

1.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 수는 58천명, 방송사업 매출액은 8,898백만원('17.12월말 기준)이다.

< 피심인의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17년 12월말 기준) >

(매출액: 백만원, 가입자: 회선)

구분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가입자 수	58,026
방송사업 매출액	8,898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일반현황

가. 영업방식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본사는 영업조직과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영업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입자 모집은 고객협력사, 영업전문점, 유통점, 콜센터, TM센터, 온라인 영업업체 등을 통한 '간접 영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송상품의 신규가입은 고객협력사, 영업전문점, 유통점을 중심으로, 방송상품의 업셀링·재약정 등은 콜센터와 TM센터를 중심으로, 부가상품 가입은 TM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 피심인의 채널별 영업방식 >

구분		본사/SO와의 관계	주요 영업 방식
간접 영업	콜센터	본사와 위탁계약	• 고객 상담 과정에서 영업 • 텔레마케팅(TM In-Bound), 해지방어 등
	TM센터		• 신규영업 및 기존 가입자 대상 추가영업 • VOD, 패키지 등 부가서비스 TM
	고객협력사	SO별 설치·철거·A/S·영업 등에 대한 위탁계약	• 현장기사의 설치·철거·A/S 과정에서 영업
	영업전문점	SO별 설치·철거·영업 등에 대한 위탁계약	• 판매사원(또는 개인사업자)의 방문판매영업
	유통점		
	온라인 영업업체	SO 또는 협력업체와 위탁계약	• 인터넷(블로그 등)에 가입조건 게시 후 고객이 상담을 희망할 경우 영업

나. 방송상품별 채널구성 및 이용요금

피심인의 이용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송상품별 채널구성 및 이용요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디지털 상품별 이용요금 >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18.6.11 기준)

구 분	HD이코노미	HD경제형	HD고급형
월 이용료	월 13,200원 이하	월 23,100원 이하	월 26,400원 이하
채널 수	비디오 100개/ 오디오 30개	비디오 182개/ 오디오 30개	비디오 205개/ 오디오 30개

< 8VSB²⁾ 상품별 이용요금 >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18.6.11 기준)

구 분	다이렉트HD 의무형	다이렉트HD 기본형	다이렉트HD 경제형	다이렉트HD 고급형
월 이용료	월 4,400원 이하	월 8,800원 이하	월 11,000원 이하	월 16,500원 이하
채널 수	20개 채널	53개 채널	66개 채널	78개 채널

2) 8VSB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으로 보통 8VSB를 이용할 경우, 디지털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아날로그 케이블 TV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도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가 없어도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음

다. 피심인의 의무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방송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시설(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조항 >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 2, 3, 4, 5]와 같습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제12조(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3조 및 각 [별표]에 정한 방송 상품을 제공합니다.
-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17.10.31.) 시 티브로드의 방송 채널 일부 차단을 통한 방송상품 영업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7.1.1.부터 '18.2.28.까지를 조사대상으로 정하여 피심인의 민원내역 분석, 녹취청취,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필터링 작업을 통한 영업행위

피심인의 각 SO별 지역사업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각 SO의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출입이 용이하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하고 필터링 작업기간을 정했으며, 필터링 작업을 위한 필터구매는 지역사업부에서 '도시청³⁾ 영업확대'의 목적으로 일괄구매 후 작업을 실시하는 영업전문점 또는 고객협력사에 전달하였다.

또한, 필터링 작업 시 가입자에게 안내할 전단지를 사전에 제작하였으나 내용은 실제 작업 목적과 다르게 '선로점검 및 품질개선'으로 제작 후 안내하였으며, 필터링 작업 대상 아파트 가입자의 A/S민원 요청 시 전산시스템 권한을 부여 받은 지역사업부 직원이 현장기사에게 해당민원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이 필터링 작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디지털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 행위

피심인의 각 SO별 지역사업부에 대해 현장조사 및 민원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95개 아파트, 6,318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별 평균 10.8일(작업기간 전체평균)간 가구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디지털 상품 가입자 5,706명이 상품종류에 따라 4~15개 채널이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도시청이란 정상적으로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시청하는 행위

< 피심인의 방송채널 일부 차단 현황 >

(단위 : 명)

SO명	사용필터 종류*	필터링 작업한 가입자 수	채널차단 된 가입자 수	상품종류 별 차단된 채널 개수			차단된 일수
				이코노미	베이직	프리미엄	
동대문방송	BT264	6,318	5,706	4~7	8~11	11~15	최소 1~2시간
				4~15			~ 최대 3일

* (사용필터 종류) BT264 : 상품에 따라 4~15개 채널차단

다. 8VSB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 행위

피심인의 각 SO별 지역사업부에 대해 현장조사 및 민원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77개 아파트, 727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별 평균 10.8일(작업 기간 전체평균)간 가구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8VSB 상품 가입자 727명이 상품종류에 따라 14~62개 채널이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방송채널 일부 차단 현황 >

(단위 : 명)

SO명	사용필터 종류*	필터링 작업한 가입자 수	채널차단 된 가입자 수	상품종류 별 차단된 채널 개수				차단된 일수
				의무형	기본형	경제형	고급형	
동대문방송	BT264	727	727	14	47	60	62	최소 1~2시간
				14~62				~ 최대 3일

* (사용필터 종류) BT264 : 상품에 따라 14~62개 채널차단

라. 필터링 작업 관련 사전 미고지 행위

피심인의 각 SO별 지역사업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필터링 작업 시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한 사례는 없으며, 필터링 작업을 실시한 가입자 7,045명 모두에게 사후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민원 강도에 따른 일부 가입자 차별 행위

피심인의 필터링 작업 결과에 따른 추가 상품 가입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제기한 2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추가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민원 강도에 따라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 후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하였다.

< 추가 상품 가입 시 차별적 할인율 적용 현황 >

구 분	일반민원		비고
	민원인 수(명)	비율	
추가 가입 없이 이용	8	31%	
패밀리상품 정상요금	12	46%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가입금액
패밀리상품 50%할인적용	6	23%	
합 계	26	100%	

바. 필터링 작업 관련 영업실적

피심인의 각 SO별 지역사업부에 대해 현장조사 및 민원녹취 등을 분석하여 필터링 작업 아파트 영업실적을 확인 한 결과, 필터링 작업 시작 전(30일 기준) 신규가입 영업실적(1일 평균)은 0.9건이고, 필터링 작업에 따른 신규가입 영업실적(1일 평균)은 122.9건으로 필터링 작업을 통해 영업실적이 13,555%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 필터링 작업을 통한 영업실적 현황 >

(단위 : 건)

SO명	필터링 작업 시작 전 한달 간 영업실적 (30일 기준)				필터링 작업에 따른 영업실적 (전체 평균 10.8일 기준)			
	신규가입		상품변경	해지	신규가입		상품변경	해지
	28	1일 평균			1,327	1일 평균		
동대문방송	28	0.9	34	88	1,327	122.9	101	5

사. 다수의 시청자 불편 유발 행위

피심인의 각 SO별 지역사업부에 대해 현장조사 및 민원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채널 차단으로 505건의 A/S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청자의 불편을 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필터링 작업을 통한 영업행위

피심인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95개 아파트(가입자 7,045명)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출입이 용이하고 영업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를 면밀하게 선정하여 이루어진 점, 자사가입자의 불만 민원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켜 기사 및 콜센터 직원과 상담하는 도중에 영업행위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 이익 보호에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나 자사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영업한 행위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심인이 가입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2. 디지털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 행위

피심인은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디지털 상품

가입자 6,318명에게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706명이 상품종류에 따라 4~15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로 금지행위 위반 요건인 시청자 이익 저해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이용약관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결될 문제로 금지행위인 '약관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제재처분은 불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심인의 이용약관 (채널)변경은 '17.2.28일 있었고 필터링 작업으로 '18.2월 까지 채널 차단이 계속 이루어져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용약관상 제공해야 하는 채널 일부를 차단해 가입자의 시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12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방송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V.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관련 법령 >

☐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5호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의3] v.1호

V.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조항 >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 2, 3, 4, 5]와 같습니다.

제12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3조 및 각 [별표]에 정한 방송 상품을 제공합니다.

3. 8VSB 상품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 행위

피심인은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가입자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8VSB 상품 정상가입자 727명에게도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여 727명의 정상가입자가 상품종류에 따라 14~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도시청 방지 과정에서 단순착오로 발생하여 부정한 의도가 없었으며 '시청자이익 저해성'이 없었고 이용약관의 보상규정에 따라 해결할 문제로서 금지행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피심인이 채널차단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작업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청자 이익 저해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채널을 최대 3일까지 차단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이익과 시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12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방송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2의3] V.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관련 법령 >

☐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5호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의3] v.1호

V.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조항 >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 2, 3, 4, 5]와 같습니다.

제12조(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3조 및 각 [별표]에 정한 방송 상품을 제공 합니다.
-

4. 필터링 작업 관련 사전 미고지 행위

피심인은 95개 아파트, 7,045명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하면서 이용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가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사후에 가입자에게 안내한 내용도 필터링 작업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다.

이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7조를 위반한 것이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 금지행위 위반사항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

다만,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이용시설 사용 시 사전고지 하도록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권고한다.

< 피심인의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조항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⑫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 하는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5. 민원 강도에 따른 일부 가입자 차별 행위

피심인이 필터링 작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26건의 불만민원 제기가 있었으며, 해당 민원의 경우 민원 강도별로 정상 요금 가입(12명), 추가 가입 없이 이용(8명), 50%할인(6명) 등 추가 가입 시 가입자에게 상품요금을 차별하였다.

이는 이용약관에 할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가입자별로 차등 적용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해당 가입자 차별 금액과 할인 건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영업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필터링 작업을 통해 정상가입자의 방송채널 일부를 차단하는 행위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 절차 개선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법령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정상가입자 방송채널 일부 차단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 방송상품 차단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자체 방송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정명령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및 고지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및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및 제70조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6호, 이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해당 위반행위가 기본채널 일부의 실시간 송출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상품 및 8VSB 상품의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으로 이에 따른 피심의 관련매출액은 1,917,481,567원이다.

나. 기준금액 : 관련매출액 x 부과기준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에 의하면 기준금액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다.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데,

본건의 경우 ①자사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시장의 왜곡 정도가 적고, ②피해 가입자 수가 총 가입자 수(3,124,827명) 대비 약 1%에 그쳤으며, ③과거 시청자 이익저해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 하되, ①피해 가입자 별로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 채널이 차단되어 차단기간이 길지 않고, ②과거 자사가입자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피해 가입자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0.3%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5,752,445원이다.

2. 필수적 조정

필수적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로 20%를 가중한다.

3. 추가적 조정

추가적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방송법 및 필터링 작업 관련 금지 행위 교육을 통해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서 5%를 감경한다.

4.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6,557,780원(원단위 절사)이다.

VI. 결 론

상기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2018년 10월 31일

위원장 이 효 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